

설 계 공 모 지 침 서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2024. 08.



목 차

I. 사업 개요	4
1. 공모 개요	
II. 건축설계 지침	9
1. 계획의 기본방향	
2. 설계 시 고려사항	
3. 대상지 관련법규	
III. 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	17
1. 공모 개요 및 방법	
2. 공모 일정	
3. 참가자격	
4. 현장설명회	
5. 응모신청서	
6. 질의 및 회신	
7. 공모심사	
8. 제공자료	
9. 공식 언어 및 계량 단위	
IV. 공모안의 제출 및 제출도서 작성	21
1. 공모안 제출	
2. 제출도서의 익명성	
3. 제출도서의 작성	
4. 제안서의 작성지침	

V. 설계심사 및 당선작 선정	25
1. 사전기술검토	
2. 심사위원회 선정 및 공개	
3.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방법	
4. 심사 시 불이익 등 처분기준	
5. 기타사항	
6. 심사결과 발표	
7. 입상작 및 보상비	
8.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9. 당선작 및 입상작 사용권 및 저작권	
VI. 계약에 관한 사항	34
1. 당선작 설계자 의무사항	
2. 저작권	
3. 작품반환	
4. 유의사항	
VII. 각종서식	38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공동응모 시)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응모 시)	
【서식 5】 응모자 서약서	
【서식 6】 보안각서	
【서식 7】 청렴서약서	
【서식 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0】 사용인감계	
【서식 11】 위임장	
【서식 12】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서식 13】 설계공모 제출서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5】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16】 평가사유서	
【서식 17】 정량적 평가 자기업체 평가표	
【서식 18】 설계설명서(설계공모 제안서)	

I. 사업개요

1. 공모 개요

1.1 공모 목적

본 지침은 평창군청(올림픽체육과)에서 시행하는 진부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사업의 설계로서 수영장을 건립하여 주민 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건강 및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다수가 체육시설해택을 누리는 동시에 지역사회 교류 협력 및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로 장기적으로 전문체육역량증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자 함.

1.2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71번지 외 7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
시행 및 주관기관		평창군청 올림픽체육과
공모 사업 범위	주요용도	운동시설(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 47,321㎡, 실사용면적 : 47,321㎡
	건축규모	기준 연면적 2,169.25㎡(연면적 조정 가능 범위 ±5%)
	건폐율 / 용적률	법정 : 20%이하 / 100%이하
규모	층수	지하1층/지상1층
	주차장	기존주차장이용
추정 공사비		7,546,000,000원 (부가세포함) / 건축물 주변 토목,조경비 포함
예정 설계비		387,000,000원 (부가세포함)
예정 설계기간		7개월 (기본, 실시설계 210일, 공휴일 포함)
과업 주요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재산정 하지 않는다.

※ 추정공사비 초과 불가(향후 실행공사비 동일)

※ 추정 공사비는 부가세 등 포함으로 건축, 건축물 주변 토목/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를 포함한 금액임 (추정공사비 손해배상공제료 미포함)

※ 예정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각종 인증비용(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협의, 부가세 등에 대한 용역비 포함 (지반조사, 현황측량, 문화재 지표조사, 예비인증 본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용역비 및 인증수수료 등은 발주기관에서 부담)

◦ 시행·주관기관 : 평창군 올림픽체육과

◦ 공모 홈페이지 : <https://www.pc.go.kr/>

▪ 광역현황

대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위치해 있으며 영동고속도로(진부IC), KTX(진부역)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함. 사업대상지는 평창군의 북부지역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강릉시, 남쪽으로 정선군, 북쪽으로 홍천군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음.

▪ 주변현황

진부면민체육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송정천(오대천), 축구장, 농구장, 평창송어종합공원에 술장이 위치해 있음. 1km 내에 진부면사무소, 진부초,중,고등학교, 진부도서관, 진부면 재래시장이 있음. 사업대상지는 주 생활권과 1km 이내 거리에 있어서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휴식을 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대상지개요

- 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71번지 외 7필지
- 부지면적 : 47,321.00m²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실사용면적	소유자	비고
계	진부면	8필지		47,321m ²	47,321m ²		
1	하진부리	1289-71	체육용지	32,675m ²	32,675m ²	평창군	
2	하진부리	353-2	체육용지	2,638m ²	2,638m ²	평창군	
3	하진부리	353-22	체육용지	3,306m ²	3,306m ²	평창군	
4	하진부리	336	체육용지	600m ²	600m ²	평창군	
5	하진부리	340	체육용지	2,724m ²	2,724m ²	평창군	
6	하진부리	349	체육용지	4,595m ²	4,595m ²	평창군	
7	하진부리	353-37	체육용지	576m ²	576m ²	평창군	
8	하진부리	353-39	체육용지	207m ²	207m ²	평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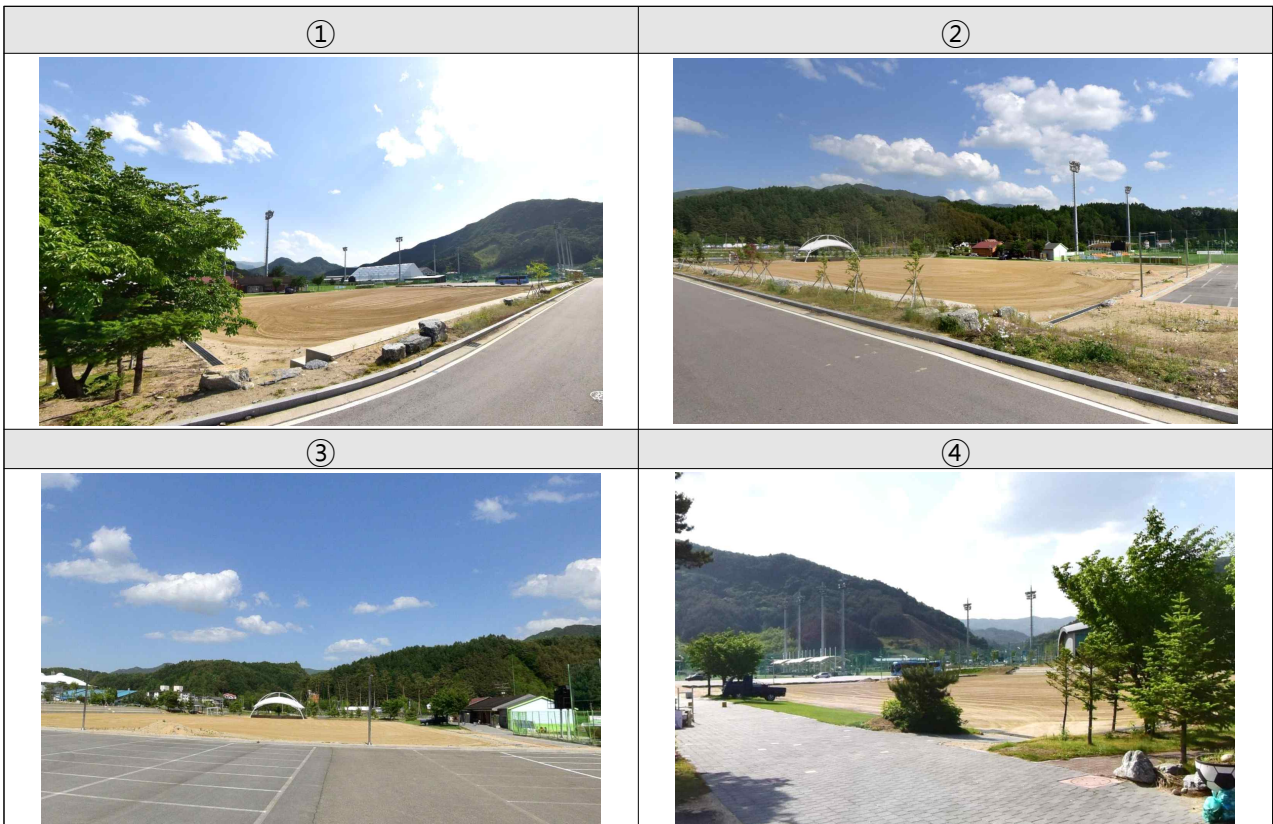
▪ 대상지 위치도



※사업부지 중 건축물은 운동장(85mX65m)1/2를 사용하고 주차장은 기존공원주차장을 사용하고 그 중 주차장1/2(28mX65m)은 주차구획선 재배치 및 진입로를 계획한다.

※운동장 잔여부지에는 별도의 건축물(막구조(58mX34m))이 있으므로 운동장 잔여부지에서 진출입이 불가능함.

▪ 대상지 현장사진



Ⅱ. 건축설계 지침

1. 계획의 기본방향

1.1 설계 일반지침

(1) 계획시 준수사항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이하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문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교통, 보안, 폐기물 등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4)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하며, 시설물 유지·보수·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방지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 적용)

(5)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재 대지위치,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지반상황, 우·오수관 위치, 급수인입점, 전기인입점 등과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 자료를 확보 수집,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재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화재, 지진, 태풍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7) 응모자는 추정 공사비의 금액 안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제안서에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은 관련법을 준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9)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설계

- 지반 및 토질조건을 추정된 합리적인 기초설계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대상시설」이 아니라도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염대상 물품으로 설계 반영한다.

(11) 위의 언급한 법령 외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 (12)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13) 평창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2. 설계 시 고려사항

2.1 설계 목표

- (1)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 되어 지역의 문화·복지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기본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다수가 체육시설해택을 누리는 동시에 지역사회 교류 협력 및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로 장기적으로 전문체육 역량증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자 함.

2.2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 기존 진부면민체육공원과 체육센터 관리운영계획이 상호작용 가능하고 연계성을 갖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함.
- (2)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가능한 평면계획 · 공간별 이용 대상의 구분이 명확히 할 수 있는 공간배치와 사용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3) 지역 주민들이 자유로이 접근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외부 휴게 및 조경공간 등을 조성하며, 시설물 1층과 외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 (4)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위반됨이 없도록 설계함.
- (5) 일시에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로 건물 내 안전과 외부공간(공개공지 등)을 고려한다.
- (6) 주 보행로를 남쪽의 보행자도로로 계획하고 주 차로는 북쪽의 단지내 도로로 하여 보차분리계획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계획한다.
- (7) 수영장 레인 수, 샤워 및 탈의실 내 장애인 이용가능한 화장실 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한다.
- (8) 안전요원실 및 응급실은 수영장과 연접하고 시창 등으로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수영지도자사무실 내부에 계획)
- (9) 공용공간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 배치 시 찾기 쉽고, 남/여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조닝계획을 고려한다.
- (10) 기계실 및 수영장 수처리실 층고, 피트 위치 등 기술적 요구조건을 고려한다.
- (11) 휴게공간(대기공간)은 수영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12) 각종 행사 및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비상 시 대피를 고려한 적정 공간을 확보한다.
- (13) 외부공간 및 내부의 공용공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14) 샤워실, 탈의실은 장애인의 신체 특성, 활동반경을 고려한 가구 및 마감계획을 한다.
- (15) 운영인력은 시설관리팀 8명(2명상주), 시설운영팀 7명(2명상주)로 한다.

2.3 배치계획

- (1) 대지 내 위치별 환경에 적합한 토지이용과 간결한 동선계획을 위한 유기적 배치 기능, 구조, 공간구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설계하되, 향후 유지관리비(열손실, 전력손실등)가 저렴하도록 계획한다.
- (2) 대지의 입지와 형태를 고려하여 전면도로에서 접근성과 가로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위치, 형태, 입면디자인을 계획한다.
- (3) 동측면을 제외한 3면에서 건물의 인지성, 정면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4) 부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배치 계획을 고려한다.
- (5) 패시브 계획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형 건물 배치를 고려한다.
- (6) 외부는 성격에 따른 영역을 구분하고 특성에 맞는 오픈스페이스,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을 만들어 다양하게 조성한다.
- (7) 체육센터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상층기능은 분리하고 상호보완기능은 인접배치토록하고 층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
- (8) 체육센터는 배치상 내.외부로부터의 소음에서 격리되고, 직사광선은 피하고 조도분포에 유의하고 색채의 조화 등도 고려
- (9) 주민에게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을 제시한다.
- (10)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물 1층과 외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 (11) 진부생활체육공원 내 현황을 유지하며 부지 북측의 단지내도로와 서측 주차장, 남쪽 축구장과의 연계계획을 고려한다.
- (12)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단지내도로와 운동장 스탠드간 단차(약1~1.5m)가 발생하므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주접근로 기준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2.4 평면계획

- (1) 지침서에 제시한 실구성 및 연면적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층별 실구성은 전체 연면적, 층수제한의 범위에서 설계자가 합리적·창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배치와 동선을 제시한다. (단, 적정한 공용면적과 각 실의 합리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각 공간 면적 계획은 $\pm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전체 연면적은 적정한 공용면적과 각 실의 합리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연면적의 $\pm 5\%$ 범위 이내에서 증가 가능)
- (2) 실의 형태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장.단변비)는 에너지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배치)

- (3) 평면계획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을 충분히 고려한 동선계획과 단위공간(출입문 슬라이딩 도어등)을 계획
- (4) 장애인이 건물로 접근할 때 편의성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고, 주차장으로부터 건물 진입 시 비가림 막 등 아이디어를 제시
- (5) 수영장 위치에 따라 이용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선차단을 위한차폐계획(식재, 시설물 설치 등) 필요
- (6) 수영장은 25mx2.5m 6레인으로 구성, 헬스장 380㎡이상, 다목적실137㎡이상 확보
- (7) 수영장 내부시설의 동선을 단순 명쾌하게 하며 성별 이용공간을 명확하게 구획하고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재료를 구성
- (8) 수영장 수질기준 및 생활체육대회 경기가 가능하도록 경기용 수영장 공인규격 반영 준수
- (9) 샤워실, 탈의실 계획 시 노약자 및 장애인 및 장애인의 신체 특성·활동반경을 고려한 가구 및 마감 계획이 필요
- (10)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능하도록 유도
- (11) 특히 락커 룸 등은 탈의실 및 샤워실과 인접하되 공용공간에 배치되어 비상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
- (12) 건축물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피난규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 (13) 관련법규와 실별 기능을 고려하여 기계·전기실의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 (14) 기타 부속 공간은 기능에 적합한 위치와 동선 고려한다.
- (15) 장애인·노인·인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이동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16) 단체 생존 수영시 수영장내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 (17) 체육활동시 안전사고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의무실, 양호실 등 운영 여부를 고려한다.
- (18) 탈의 및 샤워실은 남/여 각각 최대 수용인원을 20명으로 한다.
- (19) 탈의 및 샤워실은 이용자 동선의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조닝 설계를 권장한다.
- (20) 가족 탈의 및 샤워실을 고려한다.
- (21) 다목적실은 다이어트 댄스, 요가 프로그램으로 운영 할 예정이며 사용인원은 30명으로 계획한다.

2.5 입면·단면계획

- (1) 인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창의적인 이미지로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 (2) 전체적으로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서 경제성과 안정감 있는 입면과 자연채광 및 자연 환기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3) 지역의 상징성, 체육공간으로서의 역동성과 휴식의 친근성이 확보된 창조적 디자인으로 설계
- (4)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을 계획

- (5) 천장고와 복도는 실의 용도, 면적,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와 폭을 산정하되 공간의 쾌적성 및 공사비 절감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
- (6) 수영장의 실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 수영장 내부 습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실내 온습도 조건에 맞는 단열, 일조, 환기 등을 건축적으로 충분히 고려한 계획
- (7)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공간이므로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경제적인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단면계획 시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함께 검토하여 실내의 균질한 조도 유지 및 사용에너지 절약 방안을 유도
- (8) 수영장은 무주공간으로 계획하고, 충분한 층고 및 구조형식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수영장 실내 공간에서 구조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장스팬인 점을 고려 수영장 상부에 시설 배치는 지양
- (9) 평창 지역의 강수량과 적설량 등 자연환경을 고려한 입 단면 계획을 고려한다.
- (10) 장애인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인접한 도로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11) 마감재는 각 실별 용도에 맞게 계획하고 유지관리 및 경제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12) 기계, 전기 관련 설비 공간의 설치는 관련 법규와 기능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 (13) 법규적인 적용에 관계없이 주요구조부, 내외부 마감재 및 창호재는 반드시 내화, 방화성능을 고려한다.
- (14)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형태적 특성과 도시계획적 환경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배치 및 입면계획을 한다.
- (15) 수영장 층고는 최소 4m 이상으로 개방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16) 다목적실 반자높이는 최소 3m 이상으로 계획한다.
- (17) 건축물 입면의 경우 경제적이고 관리가 용이한 마감자재 선정으로 입면을 간소화한다.

2.6 동선계획

- (1) 건축물 전체의 동선계획은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용이한 동선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출입 동선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2) 시설 내 진출입의 편의성, 접근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3) 이용자 특성별 동선을 구분하여 배치계획을 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 동선도 고려하여 계획한다.
- (4) 동선계획 시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의 간섭을 최소화 하며, 두 동선 체계는 시설물의 이용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 되도록 계획한다.
- (5) 주변건축물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일부에 어린이 관련시설로 리모델링 계획되어있으므로 유아 및 어린이등의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동선을 계획한다.

2.7 주차계획

- (1) 기존 공원주차장을 활용한다.

2.8 에너지효율화계획

- (1) 패시브건축물의 정량 및 정성적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기본계획을 고려한다.
- (2) 제로에너지 등급 인증 관련 등급을 확보 및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규칙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다.
- (3) 에너지 소비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난방장치 및 조명기구 등을 반영한다.

2.9 토목계획

- (1)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지형 조건, 부지, 성토, 지역 여건 및 장래 계획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 (2)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한다.
- (3) 배수 및 오.폐수,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 관련 부분을 포함한다.

2.10 구조계획

- (1)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진재해대책법 및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른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 (2)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 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 공법이나 신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지하층 바닥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결로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지하외벽은 토압과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4) 지하수위로 인한 건물의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
- (5) 특히 수영장 상부 구조 형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내부에서 노출되는 구조가 품격있는 구조 형식미가 드러나도록 계획
- (6) 제시된 지질조사 보고서 검토 후 지반의 상태에 따라 기초양식을 결정
- (7) 예산 공사비 내에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조 형식 등을 계획
- (8) 무주공간으로 계획할 경우 지붕구조형식 및 지붕재료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2.11 기계설비, 소방 계획

- (1) 가장 적합한 냉난방 방식이 채택되도록 하고 모든 설비는 진동, 소음, 분진, 매연, 감전 및 누수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충분히 대비한 시설이 되도록 계획한다.
- (2) 설비계획은 배치, 평면, 구조, 방재 등 설계 각 분야에 상호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 (3) 배수계통은 우수, 오수 및 폐수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계획한다.
- (4)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유지보수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5) 에너지 절약 설계방안을 도입하고 적용하여 경제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2.12 전기, 통신계획

- (1) 전기, 통신설비공사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 (2) 비상전원 설비를 설치하여 중요설비의 용량을 충분히 만족시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3) 통신설비는 기능에 맞도록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통신(전화,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원 및 네트워크 설비는 이용자가 어느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 및 벽체 등에 적절히 배치한다.
- (4) 각 시스템은 운용, 보수 및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적이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13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기준(안)

구 분	용 도	세부시설	면적(m ²)	비 고
지하1층	기계실/전기실	기계실	302.40	
		전기실	182.00	
		복도	40.00	
	소계		524.4	
지상1층	운동시설	수영장	591.37	폭 2.5m, 길이25m 6레인
		수영자지도사무실	60.54	안전요원실, 응급실 포함
		탈의실	107.26	탈의실(여)-48.37m ² , 탈의실(남)-58.89m ²
		샤워실	107.94	샤워실(여)-53.97m ² , 샤워실(남)-53.97m ²
		헬스장	390.00	탈의실/샤워실(남,여)포함
		다목적실	138.00	
		안내데스크	43.15	참고포함
	공용공간	화장실	51.52	화장실(여)-25.76m ² , 화장실(남)-25.76m ² ,
		로비, 복도 등	155.07	
	소계		1,644.85	
합 계	전용		1,438.26	
	공용		206.59	
	기계실/전기실		524.40	
	계		2,169.25	

- ※ 상기 공간 계획 외 서비스공간(참고, 공용공간 등) 및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공간(완충공간, 상기 공간 외 추가 계획 공간 등)은 총 공사비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추가 의견수렴 및 설계자의 창작성을 발휘하여 제시 가능
- ※ 각 공간 면적 계획은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전체 연면적은 적정한 공용면적과 각 실의 합리적 기능을 확보하기위해 전체 연면적의 ±5% 범위 이내에서 증감 가능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단 수영장 25m×2.5m 6레인확보, 헬스장 380m²이상, 다목적실137m²이상)
- ※ 주요시설의 구체적인 배치 및 면적 등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3. 대상지 관련법규

- 제출된 설계안은 다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법규
- (2) 『건축법』 및 하위법령
-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표준지침』,
- (4) 『주차장법』 및 하위법령,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Ⅲ. 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

1. 공모 개요 및 방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4에 의한 설계공모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작품성 있는 우수설계안을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설계공모의 방법은 '제안공모'로 한다.

2. 공모 일정

(1) 공모일정(안)

구 분	공모일정	유의사항
설계공모 공고	2024. 08. 29.(목)	· 평창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조달청)
응모신청서 등록	2024. 09. 06.(금) (09:00부터 17:00까지)	· 장소: 평창군청 올림픽체육과 · 접수방법: 방문, e-mail 접수(유선확인 필요) (ej0402@korea.kr) (※우편, 팩스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개별 현장방문 후 서면질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서면질의로 같음
질의서 접수	2024. 09. 09.(월) (09:00부터 17:00까지)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평창군 올림픽체육과 체육시설팀 (ej0402@korea.kr, 033-330-2055) · 질의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 (평창군청 올림픽체육과 033-330-2055)
질의서 회신	2024. 09. 13.(금)	· 평창군청 홈페이지 게시 https://www.pc.go.kr/ ※ 홈페이지 게시로 서면회신을 같음함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2024. 10. 7.(월) (10:00부터 17:00까지)	· 장소: 평창군청 올림픽체육과 (※ 우편접수 불가,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
제안서 심사	2024. 10. 22.(화) 14:00~	· 발표심사 · 장소: 평창군청 · 작품접수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 평창군청 홈페이지 게시
도서반환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	· 입상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입상작은 미반환)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 각종 서류 이메일 제출 시 유선확인 필요 (평창군청 올림픽체육과 033-330-2055)

(2) 일정의 관장

-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함
-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된 일정은 메일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함
- 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의 소재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참가자격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이 아닌 자.
-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응모참가자 및 회사(업체) 모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위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수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단,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 부도, 파산, 해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 (6) 단독 또는 공동응모자는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7) 건축 설계공모 응모 신청 일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응모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한 업체에 한해 작품접수를 할 수 있다.
- (8)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 (9) 각 항의 설계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현장설명회

- (1)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 현장방문 후 서면질의에 따른 회신으로 갈음함.

5. 응모신청서

- (1) 등록일시 : 24. 09. 06.(금) (09:00부터 17:00 까지)
- (2)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e-mail 접수 (ej0402@korea.kr) -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3) 접 수 처 : 평창군청 올림픽체육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4) 기타사항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e-mail 제출 (ej0402@korea.kr)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 또는 대표건축사 날인

(5) 구비서류

-
-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서식 2】
 - 3)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 3】 (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 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서식 4】 (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 5) 응모자 서약서 1부【서식 5】
 - 6) 보안각서 1부【서식 6】
 - 7) 청렴서약서 1부【서식 7】
 - 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1부【서식 8】
 - 9) 사진접촉 여부 확인서 1부【서식 9】
 - 10) 사용인감계【서식 10】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각 1부
 - 11) 위임장【서식 11】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대리 응모에 한함)
 - 12) 건축사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 13)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 14) 건축사업무신고필증(또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건축사 협회에서 발급받은 유효 기간 내의 건축사 자격 등록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 1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외국건축사의 경우 당선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 사본 제출)
 - 16) 건축사 행정처분사실(공동응모자 포함) 확인서류(건축사협회, 소속관청) 1부.(원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 17) 공동 응모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서류는 각각 제출 하여야 하며, 외국건축사는 국외 건축사자격증, 공동업무수행계약서 사본 제출
 - 18) 제출되는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19)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외국어번역행정사 확인을 받아 제출
-

6. 질의 및 회신

(1) 제출방법 : 질의서(서식 제12호)양식에 의한 서면질의로 E-mail을 통해 제출한다.

(2) 질의기간 : '24. 09. 09.(월)(09:00부터 17:00까지) 서면질의 (이메일 접수)

(3) 질의접수처 : 평창군 올림픽체육과 체육시설팀 (ej0402@korea.kr) 033-330-2055

(4) 유의사항

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함.

나. 질의서는 참가자별로 1회에 한함

다.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서 발송 후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수신에 따른 질의서 제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mail 접수)

라. 공정한 공모 진행을 위해 유선 질의는 불가함.

(5) 질의회신

가. 질의회신일 : '24. 09. 13.(금)

나. 회신 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게시 <https://www.pc.go.kr/>

다. 유의사항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계 공모 규정 또는 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며, 설계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및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않음.
- 질의사항은 건축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질의/회신 하며,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나 표 등을 첨부로 제출/요청 가능

7. 공모심사

심사는 PT발표 10분 및 질의응답 10분 및 토론으로 실시

- 1) 일 시 : 2024. 10. 22.(화) 14:00 ~
- 2) 장 소 : 평창군청 ※ 변경 시 홈페이지(군정소식) 등록
- 3) 발 표 자 :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 1인
※ 재직증명서, 위임장(대리인 발표 시) 지참
- 4) 설명내용 : 참가업체가 작품접수 시 제출한 PDF 형식 발표자료로 한정됨

8. 제공자료

1.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2. 지형현황측량 자료(잔여부지의 설계자료(막구조물-평지))
※ 설계공모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공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9. 공식 언어 및 계량 단위

1.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2.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제공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설계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IV. 공모안의 제출 및 제출도서 작성

1. 공모안 제출

(1) 제출 요령

- 가. 제출일시 및 장소 : 2024. 10. 07.(월) 10:00 ~ 17:00까지 / 직접 방문 제출에 한함, 평창군청 올림픽체육과 체육시설팀
-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2) 제출서류 및 도서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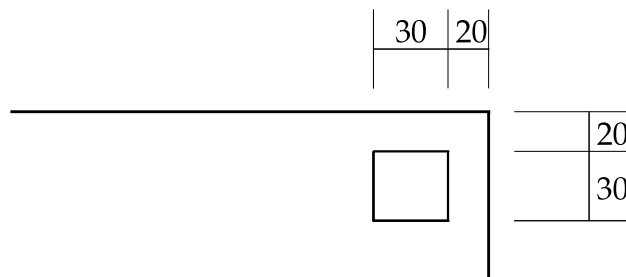
- 가.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13】
- 나.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서식 15】
 -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증빙서류 포함(민간프로젝트의 경우 발주기관(발주자)에서 발급한 증명서, 건축물대장으로 같음)
- 다. 정량적 평가 자기업체 평가표 1부 【서식 17】
- 라. 설계공모 제안서 12부 【서식 18】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과제에 대한 제안과 수행계획 및 방법
- 마. 상기 위 가~라 내용을 저장한 USB 1매(PDF형식)
- 바. 응모신청서 접수증

2. 제출도서의 익명성

- (1)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 확보 원칙은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결정 시까지 전 설계공모 기간 동안 적용되고 익명 보존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제안서 등 각종 서류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응모자 임의의 고유번호도 표시하지 아니함).
 - 나. 제안서의 우측상단에 아래와 같이 표기하되 공란으로 두어야 한다.
 - 다. 응모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표기된 공란은 평창군에 의해 일련번호로 대체한다.
 - 라. 제안서 표지는 [서식 18]을 사용한다.

《예 시》

[단위 : mm]



〈제안서〉

3. 제출도서의 작성

(1) 공통사항

가.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과제에 대한 제안'항목('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수행계획' 항목 제외)은 문장과 다이어그램, 유사사례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공모 참여자는 제안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치개념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다.

※렌더링 하지않은 3차원 이미지는 단선으로 매스만을 표현하고 음영처리는 허용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하거나 그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실격처리 될 수 있다.

다. 제출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의 규격, 쪽수, 작성방법 등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

(2) 제안서 작성기준

가. 글자 : 글자체는 제한을 하지 아니하지만(한글 및 영어 대문자), 흑색 사용, 글자 크기 10 미만 사용 불허, 영문 소문자 사용 불허.

나. 컬러의 사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3차원 이미지는 백색)

다. 페이지 번호 표기는 가운데 아래에 표기하며 줄표가 있는 형태를 사용한다. (표지 및 목차 제외)

라.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글자체, 글자 크기, 줄 간격은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마. 모든 설계도서는 제시된 형태나 디자인을 따라야 한다.

바. 제출된 제출물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사. 심사위원이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한다.

아.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식)할 수 없다.

자. 설계공모 제안서의 표지는 제공되는 서식을 사용한다. (별첨)

■ 그림1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4. 제안서의 작성지침

1. 제안서 구성 및 작성 순서 ※ 총 18쪽 이내 준수

순서	항 목	세 부 사 항	매수
1	표지	○ 서식 활용 (서식18)	1쪽
2	목차	○ 목차 (서식18)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 (최근 10년간) - 최대 2개, 컬러 가능	2쪽 (작품당 1)
4	조감도	○ 조감도 (컬러 가능) 2면, 1쪽에 모두표현	1쪽
5	건축개요	○ 건축개요 / 공간별 면적표	1쪽
6	설계개념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디자인의 방향설정 사유,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쪽
7	수행계획 및 방법	○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 컬러 및 표현방법 자유 (3차원 이미지는 백색)	9쪽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쪽
8	관련 법규검토서, 추정 공사비 개략내역서	○ 서식 활용 (서식18)	1쪽
합 계			18쪽 이내

※ 총 18매 이내 준수 (1, 2, 3, 4, 5, 6, 8 에 대한 부분은 페이지 수 및 순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순서 7에 대한 부분은 제안자의 필요에 맞추어 10페이지 이내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단, 해당 과제에 대한 내용은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부문

- 1) 담당건축사가 수행한 **기본 2개**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 2) 설계개요, 철학과 의도 등
- 3) 프로젝트 및 발주처 익명 처리(예시: 000 설계용역)

※ 포트폴리오는 실제 수행한 프로젝트(본 시설의 용도와 무관)에 한하며, 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며, 허위사실 판명 시 실격 처리(민간프로젝트의 경우 발주기관(발주자)에서 발급한 증명서, 건축물대장으로 같음)

※ 포트폴리오에 수상 실적을 표기할 경우, 공모안 제출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응모 시에는 대표건축사의 작품으로 함

※ 개요, 위치, 건축물명, 회사명 등을 기입하거나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말아야 한다.

나. 설계개념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가)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실현방안 제시
- 나) 과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이해와 분석, 문제점 등을 정리한다.
- 다) 대지와 건물의 기능 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라)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 과제에 대한 제안에서는 문장과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세한 설계도면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신에 간략한 배치, 평면, 입면 및 단면 개념도 혹은 다이어그램과 3D 이미지를 제시한다.

※ 3D 이미지 사용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1) 3D 모델링 프로그램(예. 스케치업, 라이노, 오토캐드 등)은 사용 가능하나 포토샵 등에 의한 이미지 편집은 불가(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원 이미지만 가능)

※렌더링 하지않은 3차원 이미지는 단선으로 매스만을 표현하고 음영처리는 허용함.

ex)건축물의 면은 백색만 사용하고 외부공간(도로, 대지, 조경 등)은 색상으로만 구분하여 단순하게 표현

2)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과제1)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을 제시

- 주변시설/환경과 조화로운 배치계획제시
-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유기적인 연계, 기능, 배치, 동선 등의 개념을 제시
-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방공간 고려, 외부인(방문객)을 고려한 계획 제시

과제2) 기능에 부합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공간 구성(안) 제시

-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동선 및 조닝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 구성
- 공간의 특성이 기능적으로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공간 구성방안 제시
- 안전성, 내구성, 실용성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

과제3) 친환경,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 방안 등 제시

- 건강하고 쾌적한 시설물 제공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방안 제안
-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방안 제안
- 신기술 및 소재 등 반영을 통한 유지관리 용이성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방안 제안

과제4) 설비 및 기술 계획의 방향 제시

-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설비계획 및 기술제안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기계설비 공법 및 에너지 절약방안 제시
- 수영장 습기처리 및 환기 계획 제시
(부식을 고려한 건축 마감재, 배수 및 방수계획, 층고, 울림, 환풍기 소음 등 연관 제시)

3) 수행계획 부문

- 가) 설계 소요 기간 및 행정절차 등을 고려한 설계 일정 제시
- 나)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 ① 관련 분야 전문가 구성 계획 및 운영방안
 - ② 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협의 등 발주처와 긴밀한 협력 계획
 - ③ 설계내용 해석 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 (“설계의도구현” 업무 관련)

4) 제안서 발표 및 면접

- 추진의지의 적극성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3. 일반사항

가. 기타 제출서류

1) 담당건축사의 경력

- 가)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담당건축사의 경력 인정일수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 “건축계획·설계”에 한하여 인정한다.

2) 담당건축사의 실적

- 가) 용역수행 실적은 최근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건축물(납품 기준)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 나) 담당건축사의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설계의 실적은 주 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한다.

예) AAA PROJECT, 000 신축공사 등

※ 본 지침서에서 명시한 실적 등 인정 조건에 대한 내용이 참가업체의 제출서류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실적 및 경력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 설계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사전기술검토

1. 응모작품에 대한 관계법령, 공모규정 및 지침에 기초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 전 심사위원회에 보고 제출한다.
2. 사전기술검토는 필요 시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설계공모에 대한 규정과 지침,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응모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심사 전에 기술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한다.

3. 기술검토내용

구분	항 목	위반 판단 및 심사반영 기준	운영 규정
법규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 등 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사항 위반 여부	위반 횟수 및 위반 내용에 따름	- 제출된 모든 작품 대상 검토
지침 위반	1 지침서 요구사항 위반 또는 미준수	주요 사항 위반 시 당선권 제외	- 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후 검토위원이 본심사에 참석하여 작품별 위반사항 설명 - 심사위원회에서 검토내용 반영방식을 결정
	2 예정공사비 초과	공사비 조정과정에서 제출안의 설계개념이 지켜지지 않는 현저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당선권 제외	
	3 익명성 위반	위반 횟수에 따라 당선권 제외	
	4 제출도서 누락	누락 도서 종류에 따라 감점	
	5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초과 매수에 따라 감점	
	6 지질 규격 및 제본 방법 미준수	미준수 횟수에 따라 감점	

2. 심사위원회 선정 및 공개

1. 심사위원회의 구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 3. 30., 일부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4에 준하여 발주기관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예비심사위원은 기술검토위원과 동일하다.】

2. 심사위원장의 권한과 역할

- 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를 토의를 통해 결정한다.
- 부지와 주변 상황과 설계공모 지침서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사전에 이해하고 심사위원회를 주관한다.
- 사전기술검토서를 미리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필요시 추가적인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기술검토서의 판정 내용에 대해 심사위원회 토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에 부합한 공모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심사에 반영한다.
- 심사 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불참, 제척, 회피, 기피대상인 경우 변경될 수 있음.

가. 심사위원 명단

순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이원기	성호건축사사무소	대표
2	김지현	(주)태백건축사사무소	대표
3	함성일	전주대학교	교수
4	신동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5	오상목	호남대학교	교수
6	한진수	토방건축사사무소	대표
7	안상진	도흥건축사사무소	대표
예비1	최준오	신안산대학교	교수
예비2	최경양	한샘건축사사무소	대표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심사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2) 심사위원 자격

- 가.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다.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등이 인정한 사람

3.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방법

(1) 심사위원회 운영

- 가.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다.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장의 권한과 역할

- 가. 심사의 방법 및 심사 절차를 토의를 통해 결정한다.
- 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에 부합한 공모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심사 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을 주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가.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하여야 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을 한다.

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응모된 작품 수가 다수일 경우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단계별로 심사를 할 수 있다.

(4) 심사방법

- ① 작품 심사 방법은 점수제를 원칙으로 한다.(심사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심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심사대상 공모안은 심사일 5일전에 교부함
- ③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④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및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도록 함
- ⑤ 발주자(담당자 혹은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하도록 함
- ⑥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의 수가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 ⑦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으로 하며, 각 평가점수를 더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일 경우 입상 후보 대상으로 함
- ⑧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이루어지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함
- ⑨ 최종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정하고, 이후 획득 점수의 순위대로 차순위작을 정함
- ⑩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⑪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 심사위원의 투표로 입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예: 참여업체 3개 미만 등)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평가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5) 작품설명 및 방법

가. 일시 : 2024. 10. 22.(화) / 14:00 (예정)

나. 장소 : 평창군청 소회의실(2층)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통보

다. 발표시간 및 순서

- ① 발표순서 : 당일추첨(설명순서 추첨 시 접수 확인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발 표 자 : 담당 건축사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대표건축사 소속업체 직원이어야 하며, 발표당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③ 발표시간 : 1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
- ※ 발표시간 10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간연장 불가)
- ④ 발표방법 : PPT발표
- PPT는 설계공모 제안서 내용으로만 구성하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서 내용 중 일부는 확대 및 축소 가능함
 - 당일 원활한 제안서 발표를 위해 PPT는 심사전일 14:00까지 담당자 e-mail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확인 후 수정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 제안서 이외의 내용을 넣을 경우 삭제할 수 있음 (내용은 반드시 제안서와 동일하게 작성)
- ⑤ 발표내용
- 설계개념,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 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 절대금지
- ⑥ 유의사항
- 발표자료에는 파일명이나 폴더이름, 회사명 등을 기입하거나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말아야 한다.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발표당일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 응모자는 심사 절차 및 과정, 심사방법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 작품설명 및 방법은 심의위원회가 판단하여 변경되거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질의응답을 위한 답변자는 2명(주관사 1인, 공동응모자 1인 반드시 참석)으로 제한한다.

(6) 평가기준

가. 설계자의 전반적인 역량과 업무 경험 그리고 제시된 대략적인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설계자의 전반적인 역량과 업무경험은 그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업무 수행 계획 등을 통하여 평가될 수 있다.

나. 세부평가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정량적 평가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2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5	9	8.5	8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1건 미만	
		10	9.5	9	8.5	
계	20					

※ 건축사면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별 건축물 중 '운동시설' 연면적 2,000㎡ 이상 실적에 한하며,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설계용역 (납품 기준)에 한함

② 정성적 평가 : 수행계획 및 방법(8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	A	B	C	D	E	
		10	9	8	7	6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A	B	C	D	E	
		10	9	8	7	6	
과제에 대한 제안	45	구분	A	B	C	D	E
		과제1	15	12	9	6	3
		과제2	15	12	9	6	3
		과제3	10	8	6	4	2
		과제4	5	4	3	2	1
수행계획	10	A	B	C	D	E	
		10	9.5	9	8.5	8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A	B	C	D	E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5	4.5	4	3.5	3
계	80					

[공모 제출자 수 별 평가등급 배분]

심사 대상수	등급					심사 대상수	등급				
	A	B	C	D	E		A	B	C	D	E
2	1	1				22	2	5	9	4	2
3	1	1	1			23	2	5	9	5	2
4	1	2	1			24	2	5	10	5	2
5	1	2	1	1		25	3	5	10	5	2
6	1	2	2	1		26	3	5	10	5	3
7	1	2	2	2		27	3	5	11	5	3
8	1	2	3	1	1	28	3	6	11	5	3
9	1	2	3	2	1	29	3	6	11	6	3
10	1	2	4	2	1	30	3	6	12	6	3
11	1	2	5	2	1	31	3	6	13	6	3
12	1	3	5	2	1	32	3	7	13	6	3
13	1	3	5	3	1	33	3	7	13	7	3
14	1	3	6	3	1	34	3	7	14	7	3
15	2	3	6	3	1	35	4	7	14	7	3
16	2	3	6	3	2	36	4	7	14	7	4
17	2	3	7	3	2	37	4	7	15	7	4
18	2	4	7	3	2	38	4	8	15	7	4
19	2	4	7	4	2	39	4	8	15	8	4
20	2	4	8	4	2	40	4	8	16	8	4
21	2	4	9	4	2						

4. 심사 시 불이익 등 처분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등은 발주기관 등에서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가. 불이익 등 처분 절차 및 방법

- (1)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심사 전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을 검토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하고, 실격으로 판정된 작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심사 시 실격기준 및 불이익 기준에 따른 위반사항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불이익 처분한다.
- (3) 채점제 심사 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상대평가(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한 점수의 합산 점수에 감점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나. 실격기준

항 목		비고
실 격 기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건축규모, 총 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응모자격이 없는 자, 응모서류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 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표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투표제로 실시할 경우 적용되는 실격기준 및 설계지침서 미준수에 대한 감점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불이익 기준

항 목		비고
지침위반	추정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	실격대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건축 관련 법규위반(건축선, 건축물 높이, 직통계단, 부설주차장 설치, 대지안의 공지 등)	
	연면적 범위 초과 또는 미달	
	그 외의 지침 위반사항	
도서작성 기준 위반	제출도서 기준 매수 초과 시	
	스케치업 프로그램 이상을 사용한 과도한 표현	
	제출도서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한 경우	
	제본방법 미 준수 등	
기 타	기타 각종의 평면도 등 설계도면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공간을 계획하였거나 심사위원회에서 감점으로 정하는 사항	

5. 기타사항

- ①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 ② 응모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③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름
- ④ 당선자는 진행과정 별로 발주처와 협의하며, 관련 기준 및 시민 의견 수렴 등 협의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여야 함
- ⑤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처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6. 심사결과 발표

- 가.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소식·알림 '공고'를 통해 발표한다.
- 나. 당선작 등 응모작품은 평창군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전시·공개할 수 있다.

7. 입상작 및 보상비

- 가.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 나. 우수작 : 상금 700만원(3작품 이상 5작품 미만 접수시 우수작까지 보상)
- 다. 가작 : 상금 300만원(5작품 이상 접수시 우수작 및 가작까지 보상)
 - ※ 기타입상작 수는 참가작품 품질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적용(미선정) 가능
 - ※ 설계의도구현권에 대한 비용은 추후 계약 시 정한다.
 - ※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다.
 - ※ 입상자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모안의 작성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한다. 단, 낙찰 탈락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라. 설계비 보상
 - (1) 추후 발주기관 등의 사정에 의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보상비 총액 한도 내에서 발주기관 등과 협의 지급한다.

- (2)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설계지침서에 규정된 보상 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1.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9. 당선작 및 입상작 사용권 및 저작권

1.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다만 발주처가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3.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VI. 계약에 관한 사항

1. 당선작 설계자 의무사항

- 가.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우리군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등의 사정으로 해당 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평가의견과 우리군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전기·소방·정보통신 분야의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사 및 설계업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자, 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설계자와 설계토록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 예정공사비를 기초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출하고, 공고한 설계용역비 내로 각각 요율을 조정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마.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은 계약 후 210일(우리군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이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설계도면 및 시공내역서 포함하여 공사발주 관련도면 일체)단,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 바.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우리군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 이후 각종 인.허가(변경)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타 법령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비용은 당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서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에 의거 공사 전 과정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극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아. 기타사항은 별도의 과업지시서 및 설계지침에 따른다.

2. 저작권

-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6조(사후 활용 등) 1항에 근거하여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우리군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 다.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3. 작품 반환

- 가. 입상작품(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는다.
- 나. 응모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일(또는 작품전시 종료 후)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한다.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유의사항

가. 공모 규정의 준수

-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2)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 (3)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 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4) 공모요강 및 지침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은 질의 및 회신된 바에 따르고 설계자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킨다.
- (5) 응모작품의 운송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접수된 작품에 대한 책임은 심사종료 시까지 주최 측에 있다.
- (6)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다.
- (7)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 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8)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처(우리군)의 동의 없이는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나. 이의제기

- (1) 본 공모지침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르며, 응모업체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 응모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등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무효

- (1)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에 위배되어 입상되었거나 제출서류상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입상자체를 무효화 함.

라. 승계

- (1) 다음의 경우 당선작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 업체에 부여하는 용역권은 공모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승계할 수 있음.(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보상금은 우리군에 반납하여야 하며, 당선자의 의무사항은 용역권 승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 ① 당선자가 기본.실시계획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 ② 당선작 결정 후 실격, 무효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③ 당선작 선정업체가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하게 될 경우
 - ④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⑤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활한 설계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⑥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리한 설계비를 요구한 경우

마. 기타

- (1) 응모자는 도시관리계획, 각종 영향평가 사항, 조례 등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에 대하여 확인하고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2)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한다.
- (3)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우리군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 (4)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군은 설계공모 진행 여부 및 공모 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5)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7)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23-180호, 2023. 3. 30)에 따른다.

VII. 각종서식

-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서식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공동응모 시)
-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응모 시)
- 【서식 5】 응모자 서약서
- 【서식 6】 보안각서
- 【서식 7】 청렴서약서
- 【서식 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 【서식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 【서식 10】 사용인감계
- 【서식 11】 위임장
- 【서식 12】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 【서식 13】 설계공모 제출서
-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서식 15】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 【서식 16】 평가사유서
- 【서식 17】 정량적 평가 자기업체 평가표
- 【서식 18】 설계설명서(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24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평창군수 귀하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성명 (건축사)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상기인을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2024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대표자: 소재지:)
2. 업체명 : (대표자: 소재지:)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4.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지 분 율 :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지 분 율 :

평창군수 귀하

응 모 자 서 약 서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군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 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군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서식 6】

보안각서

1. 용역명 :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2. 응모신청일 : 2024년 월 일
3. 작품제출일 : 2024년 월 일

본인은 2024년 월 일 평창군에서 공고한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가.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작품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게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나. 본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서식 7】

청 럽 서 약 서

본인은 평창군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서식 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본인은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평창군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서식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본인은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있음()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4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사 용 인 감 계

공모명: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사용 인감	
----------	--

위의 인감은 상기 공모 응모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으로 평창군에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에 사용하겠기에 제출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증명서 1부.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서식 11】

위 임 장

대표자 (위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위임받는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2】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 공모 서면 질의서

대표자 성명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주소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p>※ 질의서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근무시간 내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p> <p>※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지정된 회신 일자에 응모자 전원에게 일괄통보.</p> <p>E-mail :</p>		

【서식 13】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접수번호			
공 모 명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작 품 제 출 자	대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p>평창군청에서 시행하는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에 응모작품을 제출합니다.</p> <p>첨부 1.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서식15) -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증빙서류 포함 - 담당건축사의 용역실적 증명서</p> <p>2. 제안공모 제안서</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4.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대표자): (인)</p> <p>평창군수 귀하</p>			

(※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서식 15】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주소지		E-Mail	(휴대폰)

자 격 허 면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 경력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
- ※ 실적 :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 건축물대장 첨부
- ※ 경력증명서상 설계분야 참여기간만 인정

【서식 17】

정량적 평가 자기업체 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업체 평 점	비고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20점)	담당건축사의 경력 (10점)	12년 이상	10점		
		9년 이상	9.5점		
		6년 이상	9점		
		3년 이상	8.5점		
		3년 미만	8점		
		배 점	10점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10점)	3건 이상	10점		
		2건 이상	9.5점		
		1건 이상	9점		
		배 점	10점		
합 계		20점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정성적 평가(심사위원회) 항목에서 진행(예정)

평창군수 귀하

심사번호
기재란
(공란)

(서식18)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제안서

(중앙에 한글휴먼명조, 글씨크기 32P, 진하게)

2024. .

※ 유의 사항

1.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제공된 서식의 구성방식과 내용을 준수한다.
2. 표지 글씨는 흑색(컬로사용 불가), 좌측 전면 스테이플러 고정 후 검은색 테이핑, 테두리 없음
3. 제안서의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고 총 18쪽 이내로 작성한다.

= 목 차 =

1. 대표 작품
2.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3. 업무에 대한 이해도
4.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5. 수행계획
6. 관련 법규검토서, 추정 공사비 개략내역서

건축개요 및 시설현황

□ 사업명 :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구분	설계내역	비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	
	도로현황		
	건축면적	㎡	
	연면적	전체	㎡
		지하	㎡
		지상	㎡
	건폐율	%	
	용적율	%	
	구조		
	층수		
최고높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승강기	대		
주차개요	계	대	
	지상	대	·법정대수 산정 근거 표기
	지하	대	
	주차장 면적	㎡	·산출근거
조경개요	조경면적		·법정면적 : %
	식재면적		·설치면적 : %
	조경시설면적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표기)
	옥상조경면적		
주요 설비개요			
외부마감 (주요마감)			
기타 (에너지, 신재생,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등)			

건축물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 사업명 :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층별	용도	면적 (㎡)	비고
총계			
층	소계		
층	소계		
층	소계		
층	소계		

관련법규 검토서

□ 사업명 :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법 규 명 및 조항	대 상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 고

공사비 개략 내역서

□ 사업명 :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단위: 천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비 고 (구성비)
건축공 사	구조체							
	외장							
	내장							
	토목							
	조경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								
○○공사								
계								
계 경 비 (비율계산)								
합 계 (총공사금액)								